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6.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6월 17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6월 26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가. 제안이유

마포로1구역제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준공예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 2개의 법정동(공덕동, 염리동)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염리동 160의 1번지 외 74필지 5,804.2㎡를 공덕동으로 편입(법정동 변경)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로1구역제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안에 2개의 법정동(공덕동, 염리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능률도 저해할 수 있는 바, 사업구역의 준공 전에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에 '개정연혁표 10'을 신설하여 마포로1구역제55지구 도

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마포구 염리동 160의 1번지 외 74필지 5,804.2㎡를 법정동인 공덕동으로 편입하여 아파트 단지 내 2개의 법정동(염리동, 공덕동)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법정동인 공덕동으로 통일하고자 제출된 것임.

법정동(행정동)	필지	면적	비율(면적기준)	조정사항 법정동(행정동)
공덕동(아현동)	112	6,185㎡	51.59%	공덕동(염리동)
염리동(염리동)	75	5,804.2㎡	48.41%	

- 동 조례안은 마포로1구역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홍)으로부터 2015.5.22일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경계변경 신청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고, 마포로1구역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15. 8월말 까지 준공 완료되어 2015.9.10일부터 입주 예정으로, 현재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구역이 2개의 법정동(염리동, 공덕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는 물론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마포로1구역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소재지는 마포구 공덕동 446-34번지 일대, 연면적 58,167.7㎡, 건축면적 4,434.1㎡, 공동주택 4개동 28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주상복합건물로 이루어진 공덕파크자이 아파트로서 동일한 정비사업구역 내에 2개의 법정동(염리, 공덕동)과 2개의 행정동(염리, 아현동)을 하나의 법정동(공덕동)과 하나의 행정동(염리동)으로 통일하고자 제출된 것임.
- 또한, 동 조례안은 마포로1구역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아파트 준공이후 입주민들이 법정동 편입에 따른 각종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 이전에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의 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

○ 입주예정자, 관련 동주민센터 거주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 1) 공덕파크자이아파트 입주예정자 : 법정동은 공덕동으로 행정동은 염리동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2) 아현동주민센터 거주주민 등 종합의견 : 법정동을 염리동을 공덕동으로 하는데는 이견이 없고, 행정구역은 가까운 염리동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 3) 염리동주민센터 거주주민 등 종합의견 :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정동을 염리동을 공덕동으로 편입하는데는 반대하지 않으나, 행정관할은 반드시 염리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4) 아현동 및 염리동주민센터 거주주민과 공덕파크자이 입주예정자의 주민의견 수렴결과 법정동은 공덕동으로 행정동은 염리동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5) 동 조례안의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의견으로는 염리동 75필지 5,804.2㎡를 법정동을 공덕동으로 조정하고, 행정동은 동 사업구역 전체를 염리동 관할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임.

○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5. 6.4 ~ 6.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입주예정자, 관련 동주민센터 거주주민 및 관련부서의 종합의견과 관계법령에서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 동일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동일 정비사업 구역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일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준공이후 행정능률을 기할 수 있고, 주민편익 증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마포로1구역5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염리동을 공덕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부서에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마포로1구역5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아파트가 준공이후 법정동과 행정동의 혼용 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준공 이전에 행정 구역개편에 따른 관련공부를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개편 추진 일정별 사전점검 및 절차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